

의안번호	제 60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31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608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외 14개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복대119 안전센터 청사 시설 노후(1975년 준공)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상존과 지속적인 청사 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주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입주 및 지웰시티 1차, 2차 대규모 고층아파트 입주로 인해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現 복대119 안전센터 소방활동 대응범위를 초과하고, 원활한 소방차량 및 장비관리를 위한 신규 센터건립이 절실한 사항이며,
- 충청북도는 MICE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7년 5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하였으며 충북 오송은 국가X축 고속 교통망의 중심지로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전시컨벤션사업의 성공확인 하였고, 오송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업체 외 보건복지부 산하 6대 국책기관 등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입지하고 있어 기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설명회, 전시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B2B를 통한 기업간 상거래 장소 제공을 통하여 오송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충북 청주 전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청주서부소방서 복대119안전센터 증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5-1번지
- 사업기간 : 2017. 6. ~ 2018. 9.
- 부지면적 : 3,629m² (도유지 2,460m², 시유지 1,169m²)
 - 사 용 : 공유(시유)재산 무상대부(기존허가 '17.1.1.~'19.12.31)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220m²
- 사 업 비 : 금2,915,551천원(소방안전교부세)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등 226필지
 - 궁평리 105-10번지 등 116필지, 만수리 270-3번지 등 103필지, 봉산리 1-1번지 등 7필지
- 사업기간 : 부지 2017 ~ 2020(4년), 건축 2018 ~ 2021(4년)
- 사업규모 : 부지 182,191m², 건축 연면적 40,176m²
- 사 업 비 : 1,400억원(도 50%, 청주시 50%)
부지 600억원, 건축비 800억원

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82,191.00	60,000,000				
	건물	2건	41,396.00	82,915,551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5-1	1,220.00	2,915,551	2018.9.	기존 복대119안전 센터 노후로 철거 후, 소방종합상황실이 있는 대지에 추가 증축	충청북도	증축
	기타							
2	토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5-10번지등 116필지, 만수리 270-3번지 등 103필지, 봉산리 1-1번지 등 7필지	182,191.00	60,000,000	2020	충북 청주 전사관 건립	충청북도	신규
	건물	상 동	40,176.00	80,000,000	2021	충북 청주 전사관 건립	충청북도	신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 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